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3월 19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해진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①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② 동물의 반환 등, ③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④ 동물의 기증·분양 등, ⑤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⑥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⑦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⑧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⑨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동물보호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법률상 명시된 업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 강화 측면에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업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